

의안번호	2221718
의 퇴 인	조승래 의원
회 답 일	2026. 10. 13.
추 계 번호	26G498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국가전략기술·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 석·박사급 연구인력
인건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제외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2조제1항 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	○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제외 － 개정내용: 해당 분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－ 적용대상: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2조제1항 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·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R&D 세액공제)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,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됨

- 현행 최저한세율은 기업 유형과 과세표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

[표 1] 기업 유형별 최저한세율

기업 유형	구분		최저한세율
중소기업	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		7%
중소기업 졸업기업	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1~3년		8%
	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4~5년		9%
일반기업	과세표준	100억원 이하	10%
		100~1,000억원 이하	12%
		1,000억원 초과	17%

- 현행 R&D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는 중소기업에 한정되나,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R&D 세액공제까지 확대함
 -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특례는 2004년부터 시행¹⁾되었으나, 2012년부터 해당 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폐지됨²⁾
 - 최저한세 적용 배제 세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가 전체 연구·인력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한함
- ※ 해당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위임사항임³⁾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의 범위와 세액공제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나, 관련 세부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단계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

1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7003호, 2003.12.30. 공포)

2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133호, 2011.12.31. 공포)

3) 참고로 2004년 도입되어 2012년 폐지된 해당 특례의 시행령에서는 석·박사급 연구인력의 총급여액이 전체 연구·인력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 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

$$\text{최저한세적용배제대상세액} = \text{세액공제 대상금액} \times \frac{\text{석·박사총급여액}}{\text{연구·인력개발비}}$$